

노인시설 종사자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권선화 · 박정란¹ · 이연경²

마산대학 치위생과, ¹백석대학교 치위생학과, ²극동정보대학 치위생과

A study on the elder care facility workers' attitude towards senior citizens and on the perception towards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senior citizens

Sun-Hwa Kwon · Jeong-Ran Park¹ · Yeun-Kyoung Lee²

Dept. of Dental Hygiene, Masan University

¹*Dept. of Dental Hygiene, Baekseok University*

²*Dept. of Dental Hygiene, Keukdong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is research identified the attitude towards senior citizens targeting the workers of the facility for senior citizens to establish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early on, and to identify the degree of perception on the importance of senior citizens' oral health and on the need for dental sanitation specialists.

Methods : This research targeted 233 workers of the facility for the senior citizens located in some parts of the Gyeongnam area. Survey was conducted from December 1, 2009 to January 31, 2010 to identify the facility workers' attitude towards senior citizens and on the perception towards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Results : 1. As for the awareness towards senior citizens, 50.2% said that they are comfortable around senior citizens while degree of kindness towards senior citizens was 48.5%. 21.0% had experienced training for senior citizens' oral health management. As for the question on who should serve as the trainer, dental sanitation specialists were cited the most with 47.6%. 29.2% was very interested in the senior citizens' oral health while 83.7% said that oral cavity managers are needed in the facility for the senior citizens. As for the question on who should be in charge, if necessary, dental sanitation specialist was cited the most with 57.9%. 2. Awareness o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reatment for the oral cavity sanitation by visiting homes and information on the activity of long-term care specialists was high following the experience of training for the senior citizens' oral health management in case of the workers at the senior citizens' facility. This manifes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p<0.05$)($p<0.01$). Moreover, treatment for oral cavity sanitation manifes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manifested in the treatment for oral cavity sanitation following the need for oral health managers and who should be in charge, if necessary($p<0.01$).

Conclusions : These results advocate the need to develop diverse senior citizens' oral health management methods and to continue to carry out actions for senior citizens' oral health improvement that can be carried out by the long-term caretakers for the management of senior citizens' oral cavity health. (J Korean Soc Dent Hygiene 2010 ; 10(5) : 905-915)

Key words : facility workers, improvement of oral cavity health,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senior citizens

색인 : 구강건강증진,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설종사자

1.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전체인구의 7.2%를 만 65세 노인인구가 차지함으로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전체인구의 20%를 노인이 차지하게 됨으로써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예정이다¹⁾. 이로 인해 치매 및 뇌혈관질환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장기요양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노인들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으나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 비용과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와 핵가족화, 여성 사회활동의 확대, 의료비의 과다지출 및 만성질환으로 인한 요양보호 기간의 장기화 등에 대한 문제로 노인들에게 효율적인 장기요양 서비스는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여 노인을 부양하는 문제로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가족적 문제를 해결하며 요양서비스를 비전문적 가족 서비스체계에서 전문적인 사회보험의 체계로 전환하였다²⁾.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적인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사회적 보호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구체적으로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으로 노인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세수, 목욕, 배변처리, 식사, 세탁, 주변 환경정리, 간호처치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노인들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³⁾.

그러나 2010년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도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며⁴⁾ 더불어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시설종사자들의 인식도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을 포함하여 노인 및 장애인 등을 관리하는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종사자들은 특히 노인을 비롯한 여러 대상자들에게 전문적인 요양보호 업무를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지는 있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태도는 노인들을 요양보호할 때 요양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은 노인들에게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치과의료공급자 또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식 정도를 비교 조사한 일부 연구가 있었으나 직접적으로 요양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방문간호에서 전문구강위생처치를 담당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필요성과 노인들의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 정도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부족하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요양보호를 실시하고 있는 시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며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치과위생사 인력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해보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경남 지역의 노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09년 12월 1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법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50부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17부를 제외한 23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방법

설문문항은 김⁵⁾, 박⁶⁾이 사용한 설문지를 근거로 본 연구의 내용과 특성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항목으로는 일반적인 특성 6문항, 노인에 대한 태도 7문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1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경로는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시설종사자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에 대한 인식정도 파악을 위해서는 χ^2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N(%)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65	27.9
	여	168	72.1
연령	20~29세	73	31.3
	30~39세	52	22.3
	40~49세	83	35.6
	50세 이상	25	10.7
결혼여부	미혼	83	35.6
	기혼	148	63.5
	기타	2	0.9
학력	중졸	5	2.1
	고졸	59	25.3
	전문대졸	98	42.1
	대졸이상	71	30.5
직종	사회복지사	89	38.2
	간호사	26	11.2
	물리치료사	10	4.3
	요양보호사	79	33.9
	기타	29	12.4
근무경력	1개월~4년	146	62.7
	5~8년	49	21.0
	9~12년	19	8.2
	13~16년	11	4.7
	16년 이상	8	3.4
		233	100.0

3. 연구성적

3.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 있어서는 총 233명 중 여자가 72.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연령은 40~49세가 35.6%로 가장 많았다. 결혼여부에서는 기혼이 63.5%로 미혼 35.6% 보다 많았고 학력은 전문대졸이 42.1%, 대졸 이상 30.5%로 높게 나타났다. 직종으로는 사회복지사 38.2%, 요양보호사 33.9%, 간호사 11.2%로 순으로 나타났으며, 근무경력에 있어서는 1개월~4년 근무자가 62.7%로 가장 많았다(표 1).

3.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 경로

노인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233명 중 노인장

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202명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경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직장에서 알게 된 경우는 60.9%로 가장 많았고 TV 및 라디오 21.3%, 주변사람 8.9%, 신문 4.5%, 기타 4.5%로 나타났다(표 2).

3.3 노인에 대한 인식에 따른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인식여부

노인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편안하다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는 50.2%, 그저 그렇다 27.9%,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는 21.9%로 노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편안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에 대해 인식이 편안하다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88.9%로 높게 나타났으나, 방문구강위생처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표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 경로

구분	빈도(N)	백분율(%)
TV 및 라디오	43	3
신문	9	4.5
주변사람	18	8.9
직장에서	123	60.9
기타	9	4.5
계	202	100.0

표 3. 노인에 대한 인식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여부

구분	노인에 대한 인식			전체	p			
	편안하다	그저 그렇다	어렵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인식	예 104(88.9)	아니오 13(11.10)	예 55(84.6)	아니오 10(15.4)	43(84.3)	202(86.7)	31(13.3)	0.612
방문구강위생 처치 인식	예 54(46.2)	아니오 63(53.8)	예 17(26.2)	아니오 48(73.8)	18(35.3)	89(38.2)	144(61.8)	0.027*
장기요양요원활동 정보인식	예 38(32.5)	아니오 79(67.5)	예 11(16.9)	아니오 54(83.1)	17(33.3)	66(28.3)	167(71.7)	0.055
구강위생처치필요성	예 103(88.0)	아니오 14(12.0)	예 58(89.2)	아니오 7(10.8)	43(84.3)	202(87.6)	29(12.4)	0.710
보험급여화 설명에 대한 의사	예 59(50.4)	아니오 58(49.6)	예 30(46.2)	아니오 35(53.8)	24(47.1)	113(48.5)	120(51.5)	0.835
계	117(50.2)	65(27.9)	51(21.9)	233(100.0)				

*p<0.05

53.8%로 나타나 방문구강위생처치에 대한 인식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요양요원 활동 정보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32.5%로 낮게 나타났으나 구강위생처치에 대한 필요성 조사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88.0%로 높게 나타났으며 보험급여화에 대한 설명을 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50.4%로 나타났다. 이 중 노인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른 방문구강위생처치의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표 3〉.

3.4 노인에 대한 친절정도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여부

노인에 대한 친절정도 조사에서 매우 친절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6.0%, 친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45.7%, 보통인 경우가 48.5%로 나타났다. 이 중 친절 정도에서 매우 친절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방문구강위생처치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71.4%, 친절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49.1%,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3.9%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친절정도가 높을수록 방문구강위생처치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장기요양요원 활동정보에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구강위생처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친절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92.9%의 조사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구강위생처치가 보험급여화된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실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노인에 대한 친절 정도에서 매우 친절한 경우에 71.4%가 설명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4〉.

표 4. 노인에 대한 친절정도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여부

구분		노인에 대한 친절정도			전체	p
		매우친절	친절	보통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인식	예 아니오	14(100.0) 0(0.0)	91(85.8) 15(14.2)	97(85.8) 16(14.2)	202(86.7) 31(13.3)	0.319
방문구강위생 처치 인식	예 아니오	10(71.4) 4(28.6)	52(49.1) 54(50.9)	27(23.9) 86(76.1)	89(38.2) 144(61.8)	0.000**
장기요양요원활동 정보인식	예 아니오	7(50.0) 7(50.0)	30(28.3) 76(71.7)	29(25.7) 84(74.3)	66(28.3) 167(71.7)	0.163
구강위생처치필요성	예 아니오	13(92.9) 1(7.1)	91(85.8) 15(14.2)	100(88.5) 13(11.5)	204(87.6) 29(12.4)	0.692
보험급여화 설명에 대한 의사	예 아니오	10(71.4) 4(28.6)	56(52.8) 50(47.2)	47(41.6) 66(58.4)	113(48.5) 120(51.5)	0.052
계		14(6.0)	106(45.7)	113(48.5)	233(100.0)	

** p<0.01

표 5. 노인구강건강관리를 위한 교육경험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여부

구분		노인구강보건관리를 위한 교육경험		전체	p
		유	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인식	예 아니오	47(95.9) 2(4.1)	155(84.2) 29(15.8)	202(86.7) 31(13.3)	0.021*
방문구강위생 처치 인식	예 아니오	34(69.4) 15(30.6)	55(29.9) 129(70.1)	89(38.2) 144(61.8)	0.000**
장기요양요원활동 정보인식	예 아니오	27(55.1) 22(44.9)	39(21.2) 145(78.8)	66(28.3) 167(71.7)	0.000**
구강위생처치필요성	예 아니오	42(85.7) 7(14.3)	162(88.0) 22(12.0)	204(87.6) 29(12.4)	0.409
보험급여화 설명에 대한 의사	예 아니오	22(44.9) 27(55.1)	91(49.5) 93(50.5)	113(48.5) 120(51.5)	0.343
계		49(21.0)	184(79.0)	233(100.0)	

* p<0.05, ** p<0.01

3.5 노인구강건강관리를 위한 교육경험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여부

노인시설 종사자들의 노인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교육경험 유·무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21.0%, 받아 본 경험이 없는 경우는 79.0%로 나타나 노인시설 종사자들은 노인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노인구강건강관리를 위한 교육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95.9%로 높게 조사되었고 방문구강위생처치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도 69.4%, 장기요양요원활동정보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경우도 55.1%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노인시설 종사자들의 노인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교육경험이 높을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방문구강위생처치, 장기요양요원활동정보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p<0.01)〈표 5〉.

3.6 노인구강건강 교육담당자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식여부

노인시설 종사자들은 노인구강건강 교육을 치과위생사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치위생사 47.6%, 치과의사 40.3%,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8.2%, 간호사 3.8%로 나타나 치과위생사가 담당하는

표 6. 노인구강건강 교육담당자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식여부

구분		노인구강건강 교육담당자에 대한 의사				전체	p
		치과의사	치과 위생사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인식	예 아니오	86(91.5) 8(8.5)	93(83.8) 18(16.2)	16(84.2) 3(15.8)	7(77.8) 2(22.2)	202(86.7) 31(13.3)	0.333
방문구강위생 처치 인식	예 아니오	35(37.2) 59(62.8)	46(41.4) 65(58.6)	7(36.8) 12(63.2)	1(11.1) 8(88.9)	89(38.2) 144(61.8)	
장기요양요원활동 정보인식	예 아니오	23(24.5) 71(75.5)	31(27.9) 80(72.1)	9(47.4) 10(52.6)	3(33.3) 6(66.7)	66(28.3) 167(71.7)	0.240
구강위생처치필요성	예 아니오	86(91.5) 8(8.5)	97(87.4) 14(12.6)	14(73.7) 5(26.3)	7(77.8) 2(22.2)	204(87.6) 29(12.4)	0.140
보험급여화 설명에 대한 의사	예 아니오	48(51.1) 46(48.9)	52(46.8) 59(53.2)	9(47.4) 10(52.6)	4(44.4) 5(55.6)	113(48.5) 120(51.5)	0.932
계		94(40.3)	111(47.6)	19(8.2)	9(3.8)	233(100.0)	

표 7. 노인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정도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식여부

구분		노인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정도			전체	p
		많음	보통	적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인식	예 아니오	61(89.7) 7(10.3)	102(86.4) 16(13.6)	39(83.0) 8(17.0)	202(86.7) 31(13.3)	0.576
방문구강위생 처치 인식	예 아니오	44(64.7) 24(35.3)	40(33.9) 78(66.1)	5(10.6) 42(89.4)	89(38.2) 144(61.8)	0.000**
장기요양요원활동 정보인식	예 아니오	30(44.1) 38(55.9)	30(25.4) 88(74.6)	6(12.8) 41(87.2)	66(28.3) 167(71.7)	0.001**
구강위생처치필요성	예 아니오	54(79.4) 14(20.6)	108(91.5) 10(8.5)	42(89.4) 5(10.6)	204(87.6) 29(12.4)	0.050
보험급여화 설명에 대한 의사	예 아니오	39(57.4) 29(42.6)	52(44.1) 66(55.9)	22(46.8) 25(53.2)	113(48.5) 120(51.5)	0.211
계		68(29.2)	118(50.6)	47(20.2)	233(100.0)	

** p<0.01

표 8. 노인구강건강 관리자의 필요 여부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식여부

구분		구강건강관리자의 필요 여부		전체	p
		예	아니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인식	예 아니오	173(88.7) 22(11.3)	29(76.3) 9(23.7)	202(86.7) 31(13.3)	0.042
방문구강위생 처치 인식	예 아니오	73(37.4) 122(62.6)	16(42.1) 22(57.9)	89(38.2) 144(61.8)	0.357
장기요양요원활동 정보인식	예 아니오	52(26.7) 143(73.3)	14(36.8) 24(63.2)	66(28.3) 167(71.7)	0.141
구강위생처치필요성	예 아니오	179(91.8) 16(8.2)	25(65.8) 13(34.2)	204(87.6) 29(12.4)	0.000**
보험급여화 설명에 대한 의사	예 아니오	99(50.8) 96(49.2)	14(36.8) 24(63.2)	113(48.5) 120(51.5)	0.081
계		195(83.7)	38(16.3)	233(100.0)	

** p<0.01

표 9. 노인구강건강 관리담당자에 대한 의사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식여부

구분	노인구강건강 관리담당자에 대한 의사				전체	p	
	치과의사	치과 위생사	요양보호사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인식	예 아니오	42(93.3) 3(6.7)	97(85.8) 16(14.2)	24(96.0) 1(4.0)	10(83.3) 2(16.7)	173(88.7) 22(11.3)	0.313
방문구강위생 처치 인식	예 아니오	21(46.7) 24(53.3)	42(37.2) 71(62.8)	8(32.0) 17(68.0)	2(18.2) 9(81.8)	73(37.6) 121(62.4)	
장기요양요원활동 정보인식	예 아니오	16(35.6) 29(64.4)	24(21.2) 89(78.8)	9(36.0) 16(64.0)	3(25.0) 9(75.0)	52(26.7) 143(73.3)	0.199
구강위생처치필요성	예 아니오	44(97.8) 1(2.2)	108(95.6) 5(4.4)	16(64.0) 9(36.0)	11(91.7) 1(8.3)	179(91.8) 16(8.2)	
보험급여화 설명에 대한 의사	예 아니오	23(51.5) 22(48.9)	55(48.7) 58(51.3)	16(64.0) 9(36.0)	5(41.7) 7(58.3)	99(50.8) 96(49.2)	0.503
계		45(23.1)	113(57.9)	25(12.8)	12(6.2)	195(100.0)	

** p<0.01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치과위생사가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83.8%로 나타났으며 방문구강위생처치에 대한 인식은 41.4%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강위생처치의 필요성에서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87.4%, 보험급여화 설명에 대한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6.8%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6).

3.7 노인구강건강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식여부

조사대상자들의 노인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 조사에서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경우는 29.2%로 나타나 이를 통해 노인시설 종사자들은 노인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구강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응답자 중 방문구강위생처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는 64.7%, 장기요양요원 활동정보 인식에서는 44.1%로 나타나 관심이 적은 응답자들보다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표 7).

3.8 노인구강건강 관리자의 필요 여부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식여부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노인구강건강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83.7%로 매우 높았다. 노인구강건강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구강위생처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91.8%로 나타나 구강위생처치에 대한 필요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표 8).

3.9 노인구강건강 관리담당자에 대한 의사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식여부

〈표8〉에서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노인구강건강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195명 중 노인구강건강 관리를 치과위생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사가 57.9%, 치과의사 23.1%,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12.8%, 간호사 6.2%로 나타나다. 또한 노인구강건강 관리담당자로 치과위생사가 해야 한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중 구강위생처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95.6%로 구강위생처치가 필요하다는 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표 9).

4. 총괄 및 고안

20세기 들어서면서 산업사회에서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2018년부터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장 등⁷⁾은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계층의 단순한 신체적, 기능에 따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건강 및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노인, 가족과 사회구성원 모두의 복지수준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에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을 앓게 되는 노인도 증가하므로 이⁸⁾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노부부 세대의 증가 등의 여러 원인으로 인해 가정에서 이들 노인들을 수발한다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부양부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고, 결국 많은 논란을 거듭한 끝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노인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정도를 파악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38.2%, 요양보호사 33.9%, 간호사 11.2%, 물리치료사 4.3%, 기타 12.4%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233중 202명(86.7%)이 알고 있었으며 이는 안 등⁹⁾의 치과종사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도 42.4%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경로 조사에서는 직장에서 60.9%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박과 권¹⁰⁾의 연구에서 TV 및 라디오, 안 등⁹⁾의 연구에서 방송보도를 통한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것에 비해 노인시설에 근무하는 특성 상 직장에서 가장 많이 인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에 대한 인식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의 인식여부에서 시설종사자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에서 편안하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가 50.2%로, 박과 권¹⁰⁾의 치과위생사 31.6%에 비해 노인에 대해서 비교적 편안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¹¹⁾, 최¹²⁾ 연구결과에서 긍정적인 노인관이 노인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이는 김¹¹⁾의 연구결

과와 같이 노인을 가까이 해 왔고, 그 속에서 노인을 더욱 이해하고 편견을 지양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에서 편안하다고 응답한 경우 방문구강위생처치인식도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노인에 대한 친절정도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 여부에서 박과 권¹⁰⁾의 연구에서 치과위생사들의 노인환자에 대한 친절정도는 매우 친절 7.2% 친절 51.0% 보통 41.9%로 조사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노인에 대한 친절정도는 매우 친절 6.0%, 친절 45.7%, 보통 48.5%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에 대한 친절 정도가 높을수록 방문구강위생처치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따라서 시설종사자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설종사자들의 노인에 대한 친절 중심의 서비스 마인드 확립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인 응대 강화에 중점을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시설 종사자들의 노인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교육경험 유·무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21.0%는 박과 권¹⁰⁾의 치과위생사의 재직 중 노인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노인시설 종사자들의 노인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노인시설 종사자들의 노인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교육경험이 높을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방문구강위생처치, 장기요양요원활동정보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p<0.01$). Haught 등¹³⁾의 연구에서도 노인에 대한 강의를 통해 지식이 증가하고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노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주며 이를 통해 시설종사자들의 노인건강에 대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구강건강 교육담당자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여부에서는 치위생사 47.6%, 치과의사 40.3%,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8.2%, 간호사 3.8%로 나타나 치과위생사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그러므로 실제 장기요양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노인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주변사람들의 관심을 증가시키고 노인구강건강을 높일 수 있는 관심과 실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시설종사자들의 노인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 조사에서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경우는 29.2%로 나타나 이를 통해 노인시설 종사자들은 노인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구강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응답자 중 방문구강위생처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는 64.7%, 장기요양요원 활동정보 인식에서는 44.1%로 나타나 관심이 적은 응답자들보다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박과 권¹⁰⁾의 조사에서도 노인의 구강건강문제에 관심이 많은 치과위생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장기요양요원활동 정보인식, 장기요양요원근무 의사여부, 방문간호센터 근무의사여부, 장기요양요원별도 교육여부에서 관심이 적은 응답자보다 더 높은 인식을 보였다. 따라서 시설종사자들의 노인구강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노인에 대한 이해를 고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노인구강건강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83.7%로 매우 높았다. 노인구강건강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구강위생처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91.8%로 나타나 구강위생처치에 대한 필요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시설종사자들은 노인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았지만 노인구강건강을 위한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경우가 83.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원¹⁴⁾은 노인들에게 혼자 힘으로 구강건강관리가 어려운 노인들의 경우 그들을 대신하여 적극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실행하는 데에는 방문건강관리인력의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노인시설에도 노인구강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노인구강건강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195명 중 노인구강건강 관리담당자에 대한 의사에서 치과위생사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의사 23.1%, 영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12.8%, 간호사 6.2%로 나타났다. 또한 치과위생사가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중 구강위생처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95.6%로 구강위생처치가 필요하다는 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노인은 스스로 구강건강증진을 실행하려는 실천과 지식이 부족하므로 노인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며 노인구강건강관리자로 치과위생사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실제적으로 노인시설에 있는 노인 각 개인의 구강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노인구강건강관리를 실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으로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치과위생사가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구강건강관리방법이 개발되고 노인구강건강을 위한 실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대상이 경남지역의 일부 시설종사자로 대상으로 노인들에 대한 태도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정도를 연구한 결과로서 전체 시설종사자들에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위해 향후 좀 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노인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노인구강 건강관리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업무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일부 경남지역에 노인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시설종사자 233명을 대상으로 2009년 12월 1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 실시하고 2008년 7월 1일에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여부와 시설종사자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노인 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종사자 중 사회복지사 38.2%, 영양보호사 33.9%, 간호사 11.2%, 물리치료사 4.3%, 기타 12.4%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알고 있는 경우는 86.7%로 높았으나 방문구강위생처치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46.2%로 낮았다. 또한 장기요양요원 활동정보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경우는 32.5%로 매우 낮았으나, 구강위생처치 필요성에 대한 의사에서는 88.0%, 방문구강위생처치의 보험급여화 설명에 대한 의사는 50.4%로 나타났다.

2. 노인에 대한 인식에서는 편안하다 50.2%로 조사되었으며 노인에 대한 친절 정도는 보통 48.5%로 나타났다. 노인구강건강관리를 위한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는 21.0%, 교육담당자로 누가 해야 한다는 의사에서는 치과위생사가 47.6%로 가장 높았다. 노인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경우는 29.2%,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노인구강관리자가 필요하다는 의사는 83.7%로 높았으며, 필요하다면 누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사에서는 치과 위생사가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노인에 대한 인식정도와 친절정도에 따른 방문구강위생처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노인시설 종사자들의 노인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교육경험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p<0.05$), 방문구강위생처치, 장기요양요원활동정보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4. 노인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정도에 따른 방문구강위생처치, 장기요양요원활동정보에 대한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또한 구강건강관리자의 필요 여부와 필요하다면 누가 담당해야 한다는 구강건강 관리담당자에 대한 의사는 구강위생처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참고문헌

1. 우리나라 인구통계자료 2008.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2010.
3. 노인장기요양보험 제2조 2010.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주년 토론회 자료 2010.
5. 김미은.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시설조사자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6. 박소연. 초고령사회 보건기관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인식도.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7. 장은희, 김후자, 권영남 외 2인. 독거노인과 가족동거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와 건강행위에 관한 연구. 영남이공대학 논문집 2004:91-104
8. 이인호. 노인수발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9. 안권숙, 지민경, 민희홍.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치과종사자의 인식도 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9;9(1):169-180.
10. 박정란, 권선화. 치위생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도 연구. 치위생과학회지 2009;9(3):279-286.
11. 김정윤. 간호사들의 노인관련 지식과 태도와 행동.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2. 최성숙. 경주지역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과학회 2007;7(2):59-64.
13. Haight P.A, Wall R.t, Laney J.D, Leavell A, and Stuzen S. Child and Adilscent Knowledge abd attitude about older adults across time and states. Educational Gerontology 1999;25(6):501-517.
14. 원재희. 방문건강인력의 구강건강인식, 지식과 실천.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